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0

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김기현·김석기·이주환

이채익 • 권명호 • 지성호

박수영 • 곽상도 • 서병수

김승수 · 이 영 · 태영호

윤두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.

그러나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임에 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, 그간의 면세 혜택을 통해 양 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면세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 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 이 「부가가치세법」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 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0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9호의3, 제11호 및"을 "제9호의3 및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
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<u>제9호</u>	<u>제9</u>
<u>의3, 제11호 및</u> 제12호는 2022	호의3 및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	
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	
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	
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	
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
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	
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	
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
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	<u><삭 제></u>
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,	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에	
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	
분유는 제외한다)	
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